

의료관광 대상 주요국가, 코로나-19에 대한 조치 현황

2021. 12. 3 (금) 기준

* 아래 조치 현황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 조치는 해당 출처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hina

* 출처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p>● 확진자 : 98,897명 (사망 4,636명)</p>	사망률 : 4.7%
대응조치	<p>▶ 입국관련 조치(중국 내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8.)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4.1.)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 ○ (8.5.) 한국인의 경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 ○ (9.28.)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의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는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 :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비자신청 : 중국비자신청서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3.9) 백신여권출시 : '국제여행 건강증명서' 디지털 발급 시스템을 위한 미니앱으로 정식 개통, 국가 간 상호인증 논의 추진 중 <p>▶ 입국관련 조치(홍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비자 무소지자(홍콩 비거주자) 입국금지 원칙이되, 홍콩 입국 전 14일간 체류국가에 따라 차등적 방역조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8.9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 홍콩 입국사증 없이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최장 90일 체류 가능 ※ 모든 홍콩 방문객은 홍콩행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의무격리를 위한 홍콩정부 지정호텔 예약증을 필수 소지 ※ 입국 대상 : 홍콩거주자 또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홍콩비거주자 ※ 탑승 조건 : 백신접종증명서(영문/중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21박(백신 미접종)/ 14박(백신 접종완료)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 격리 조건 : 21박/14박 지정호텔 격리 격리 중 코로나19 검사 격리후 7일 능동감시, 도착 후 지정일에 코로나19 재검사 <p>▶ 입국관련 조치(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5.19.부터 거주증 소지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대만 방문은 물론 대만에서의 단순 경유도 금지 ▶ 예외적 입국 시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후 방역호텔 집중검역시설 자사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4.26~) 격리위반 외국인에 최대 4천만원 벌금 부과 예정 	<p>* 출처 및 참고링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upload/cntnts/cn-zh/visa_new.pdf 2. 각 지역 정부망 http://www.gov.cn/ 3. Bendibao(本地宝) http://heb.bendibao.com/news/202049/54293.shtml 4. 대만위생복지질병관리본부 https://www.cdc.gov.tw/ 5. 대만외교부 영사국 https://www.boca.gov.tw/mp-1.html 6. 대만 이민서 https://www.immigration.gov.tw/ 7.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kr.china-embassy.org/kor/ 8. 건강 OR코드 관련 주한중국대사관 지정 웹사이트 https://hrhk.cs.mfa.gov.cn/H5/
기 타	<p>▶ 특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올해 연말까지 3~11세 백신 접종 완료 목표 ○ (중국) 베이징 코로나19 위험등급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 ○ (대만) 콜롬비아발 '뮤' 변이는 대만에 이미 유입 ○ (대만) 모든 해외입국자 검역소 이동시 방역차량이용의무화 ○ (대만) 백신 접종 완료 격리자 자가격리 규정 일부 완화 ○ (대만) 아프리카 6개국 입국자 방역 강화 	<p>https://www.immigration.gov.kr/immigration/index.do</p>

구 분	내 용	비 고
<p>코로나-19 현황</p>	<p>● 확진자 : 1,726,751명 (사망 18,358명)</p>	<p>사망률 : 1.1%</p>
<p>대응조치</p>	<p>▶ 사증발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 제한)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 정지 계속) ○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사증 신청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사정 판단 문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증 상담용 주소: visa@so.mofa.go.jp 전화 번호: 02-739-7400 <p>▶ 입국관련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22.)당분간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자택 대기(격리) 필요 ○ (21.1.9.~)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 (21.1.13.~)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PCR 검사증명서 제출 (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입국 후 3일째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자택에서 대기 (상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및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p>▶ 자가격리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스스로 자택 혹은 시설, 교통(자차, 렌트카 등) 확보 ○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 금지 ○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및 건강상태 보고 ○ 비용 모두 본인 부담 ○ 사업목적 단기방문 시 예방접종 완료 기업인에 한해 격리기간 3일로 단축 예정 	<p>코로나감염증 대책 관 : https://corona.go.jp/ko/</p> <p>주한일본대사관 : https://www.kr.emb-japan.go.jp/itp_rtop_ja/index.html</p> <p>주일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jp-ja/index.do</p> <p>위생노동성 : https://www.mhlw.go.jp/index.html</p> <p>특별입국시 필요한 애플 등록·이용 방법: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_1_00250.html</p>
<p>기 타</p>	<p>▶ 항공운항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공항, 간사이공항, 주부국제공항으로 한정 ○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 환승 가능 <p>▶ 백신접종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접종일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이자 : 12세이상 2. 모더나 : 18세이상 3. 아스트라제네카 : 40세이상 ○ 12월부터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예정 ○ (10.26) 예방접종률 70% (G7국가 중 3위) ○ (10.28)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에 격리기간 10일로 축소 ○ (11. 1) 27개 지역에 대규모 행사 10,000명 인원제한 해제 일반 행사 5,000명 또는 수용인원 50%까지 입장 허용 <p>▶ 특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30)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해 신규 입국 전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일시 중지 ※ 한국발 특별입국시 모든 입국 및 귀국자에 대해 12월 3일 0시 기준 검역 장소에서 6시간 대기, 입국 후 3일째 / 6일째 검사 실시 	<p>1. 일 항공편 참고 : - ANA항공 : 1월11일까지 비운항 - JAL항공 : 1월말까지 비운항</p> <p>2. 백신접종 관련 :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18.html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vaccine_00184.html</p> <p>3. 백신접종자 격리 관련 :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307.html https://www.anzen.mofa.go.jp/covid19/certificate_to_Japan.html</p> <p>4. (21.12.1)특별한 사정 입국 관련 : https://www.moj.go.jp/isa/content/01347330.pdf https://www.tokutenyoko.com/news/passage/15398</p>

구 분	내 용	비 고
<p>코로나-19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확진자 : 9,500,836명 (사망 271,091명) ● 카자흐스탄) 확진자 : 1,055,779명 (사망 17,856명) ● 우즈베키스탄) 확진자 : 193,424명 (사망 1,406명) 	<p>사망률 2.9% 사망률 1.7% 사망률 0.7%</p>
<p>대응조치</p>	<p>▶ 러시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16~)한국-러시아 운항 재개 및 러시아 입국 허용 (육로 입국 불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 ※ 학생비자 및 노동·상용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有 ○ (20.3.30~)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공식 대표부 등 소속직원 국제운송차량 운전자, 하천 선박승무원 등 제외 ○ (21.7.7~)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코로나 백신 접종자 및 완치자 자가격리 면제 <p>▶ 카자흐스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5.3~) 카자흐스탄에서 백신접종 완료 카자흐스탄 국민 및 영주권자는 카자흐스탄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대신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세 이하인 자 음성확인서 소지 면제 ※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입국, 환승 제한 규정 폐지 - (21.5.12~) 누르술탄 국제공항 내 'Ashyq' 앱 사용 의무화 (감염 확인 앱) ○ (21.12.3~)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나미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홍콩 입국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미크론 발생국발 입국자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입국전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필수 및 7일간 자가격리 <p>▶ 우즈베키스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편 방역등급상 적색 국가(한국 등)에서 출발하는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탑승 전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 영어 또는 노어) 제출 의무 △가주지 혹은 호텔 등에서 2주간 격리 시행(21.7.29.) ※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한 한국 내 PCR 검사기관 지정(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및 해당 항공사 확인 요망)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였다는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체내에 코로나19 항체가 있다는 항체증명서를 소지하고 항공기나 열차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입국시 14일 자가격리를 포함한 일체의 제한 조치 없음(21.9.16) - 백신의 종류 및 최종 접종 후 경과기간에 제한은 없으며,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유효하게 발급한 증명서라면 인정 (다만, 영문 또는 노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QR코드가 인쇄된 종이증명서 권장) ※ 차량을 이용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입국 하는 모든 사람은 국경검문소에서 자기비용으로 코로나19 신속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 시에만 입국 가능 ○ (21.12.3~22.1.10.)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 국제항공편(경유 포함) 일시 중단 및 14일 체류 이력의 제3국 국민 입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독일, 덴마크, 이태리, 네덜란드, 체코, 호주, 이집트, 이스라엘 발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p>* 출처 및 참고링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r-uz-ko/brd/m_7333/list.do?page=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2. 주알마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kz-almaty-ko/brd/m_8314/list.do 3.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uz-ko/brd/m_8555/list.do
<p>기 타</p>	<p>▶ 항공 운항 관련 등 (러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 : KE923/4(인천↔모스크바) 12/31까지 주 1회 운항 <p>▶ 항공 운항 관련 등 (카자흐스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아스타나 항공 : 7.1부터 월요일, 금요일 - 아시아나 : OZ577/578(인천 ↔ 알마티) 12/1~12/31 주 2회 (수금 운항) <p>▶ 항공 운항 관련 등 (우즈베키스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나 : OZ573/574 (인천 ↔ 타슈켄트) 11/10~ 12/31 주 1회 (수) 운항 - 대한항공 : KE941/2 (인천 ↔ 타슈켄트) 12/31까지 주 1회 운항 <p>▶ 특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트페테르부르크, 백신접종증명서 의무화 - 12월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확대 - 오미크론 변이 우려에 여행 관련 규제 강화 - 스푸티니크V,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 ○ (우즈베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생산 스푸티니크 V 백신 시장에 유통 시작 - CDC의 '감염'수준을 알 수 없는 국가' 지정 - 2차 접종 완료자의 자발적 부스터샷 허용 ○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세 이상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백신접종 시작 - (11.22) 수도 알마티 지역 3차 부스터샷 시작 (시노팜, 카즈백) - (12.1) 오미크론 변이 발생위험 12개국 항공 중단 및 방역 강화 	

Vietnam

* 출처 :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구분	내용	비고
코로나-19 현황	● 확진환자 : 1,252,590명 (사망 25,448명)	사망률 : 2.0%
대응조치	<p>▶ 사증발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22.~)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p>▶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공무·특수 경우: 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동반자 고급 기술인력 ※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예외적 입국 가능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8.3.)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지작성 및 제출, 입국 3-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제시, 국제의료보험 가입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 ※ 해외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는 보건부 지침발표(21.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격리 종료후 14일 자가 및 체류지내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포함 - WHO 승인 백신접종 완료자(또는 감염 후 완치자)는 입국시 시설격리 기간을 14일→7일로 단축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기 타	<p>▶ 항공운항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 KE679 (인천-하노이) 12/31까지 비운항 KE680 (하노이-인천) 12/31까지 주 3회 운항 - 아시아나 OZ733 (인천 → 하노이) ~12/31비운항 OZ734(하노이→인천) 12/31 주 6회 <p>▶ 특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노이, 12~17세 인구 95%에 예방접종할 계획 ○ 올해까지 18세 이상 성인에 백신접종 완료할 계획 ○ 해외관광객 조건부 입국 허용 (일본 한국 미국 등 관광객 입국 조건부 허용) 	-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Thailand

* 출처 : 주태국대한민국 대사관

구분	내용	비고
코로나-19 현황	● 확진환자 : 2,120,758명 (사망 20,814명)	사망률 : 1.0%
대응조치	<p>▶ 사증발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13~)한-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 (20.12.17.)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 대표단 필수 물품 운송자(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태국 영주권자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코로나19를 제외한 의료 목적 방문 장기 거주 비자 취득 희망 외국인 Thailand Elite Card/Thailand Privilege Card 소지 외국인 APEC Card 소지 한국인 태국 투자 또는 사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영화 또는 방송 촬영을 희망하는 외국인 무사 증제도 이용 외국인 Tourist Visa(6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 외국인 Special Tourist Visa(90일 체류 가능) 은퇴 후 정부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운동 선수 예외 <p>▶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1.1~) 한국 포함 63개국 및 지역 발 입국자 아래 요건 하에 격리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 완료(12세 미만 제외) - 63개국 및 지역 내 연속 21일 이상 체류(환승/경유 제외) - Thailand Pass** 발급(입국허가증COE 대체) -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5만불 이상 치료비 보장 보험가입 증명서 - 정부지정격리장소 숙박료 납입증명서 -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 입국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 필수지참서류제출 - 모니터링 시스템/어플리케이션 설치 - PCR 검사 1회 및 음성판정 시까지 격리장소 대기 - 6~7일차에 PCR 검사 실시 및 결과 업데이트 ※ 백신 미접종자 : 최소 7일 격리 필요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th-ko/brd/m_22304/list.do
기 타	<p>▶ 항공운항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 KE651/652 (인천→방콕) 11월말까지 매일운항 - 아시아나 OZ741/742(인천 ↔ 방콕) ~12/31 매일 운항 	태국 입국 가능 외국인 유형 : http://overseas.mofa.go.kr/th-ko/brd/m_3246/view.do?seq=128039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